

제413회 임시회
운영상황결과보고

(2024. 9. 3. ~ 9. 10.)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담당관실)

제 413회 임시회

(2024. 9. 3. ~ 9. 10.)

제413회 임시회 개회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올여름 그 여내 해보다 심한 무더위에

정말 고생하셨다는 인사부터 드립니다.

폭염과 코로나로부터 도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분주히 현장을 다니신 의원님과 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후위기 경보가 무섭습니다.

기상이변은 지구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가 탄소중립을 정책기조로 삼고

각종 제도에 반영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거창한 당론까지는 아니어도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절박한 심정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정책을 입안하는 단계에서부터 탄소중립이라는 필터를

기본적으로 거쳐야 하겠습니다.

의회도 모든 의정활동에 환경지표를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영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전북자치도 내년 국가예산 정부안은 9조 600억 원입니다.

정부의 긴축 기조에도 새만금 SOC 예산을 6660억 원 확보했고,

바이오·이차전지 등 신산업 기반구축비를 배정받은 것은 성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전주권 통합재활병원 건립 예산도 요구액의 절반만 반영되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국가예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지역에서 요구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정부의 새만금 예산 폭거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심리적 손실을 만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한마음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예산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입니다.
광역교통망은 지역 간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해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를 만들어 냅니다.
최근 대광법 개정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전향적으로 바뀐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대광법 개정이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고삐를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거석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학기가 시작되면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됐습니다.
늘봄학교는 공교육 역할을 확장한다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준비가 부족해 현장에서 문제가 잇따랐습니다.

확대된 늘봄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교 밖 늘봄을 운영하는 등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했다니
늘봄과 교육의 기능이 제대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학생과 종사자, 학부모, 참여주체 모두가 만족하는
전북형 늘봄으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들어 청소년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제작·유포로 신종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급격한 사회변화의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우리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상황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예방과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 청소년들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회에서도 미래 세대를 지키는 일에 함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후반기 의회 출범 이후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의회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의회 관련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의원 정수 확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8일 국회를 방문해서 전북특별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감사위원회 소속을 도의회로 이관하는 것과 지방의회 교육·학예 사무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입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완전히 수행하고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의회는 지난달 30일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경기가 위축되면서 지역기업, 특히 소상공인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기업들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관련 지원 제도를 꼼꼼히 살피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활동과 정책제안을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최되는 제413회 임시회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돌보기 위한 자치입법 제정에 나섰습니다.

고령장애인, 경계선 지능 학생, 중장년 농업인, 아동, 시각장애인을 위한
조례를 마련합니다.

이들 조례가 실효성 있는 정책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문 승 우

목 차

제413회 임시회

I. 집회 및 의사일정

1. 공고 및 집회	8
2. 회기 및 운영	8
3. 의 사 일 정	9

II. 의안접수 및 처리

1. 접 수 현 황	15
2. 처 리 현 황	16

III. 민원 접수 및 처리

1. 접 수 현 황	82
2. 처 리 현 황	82
3. 위원회별 처리현황	83

IV.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1. 2024년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84
2. 2024년 위원회별 요구상황	84
3. 제12대 의회 의원 요구 및 제출현황	85
4. 제12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	85

I. 집회 및 의사일정

1. 공고 및 집회

- 집회 공고 : 2024. 8. 27.(화)
- 집회 일자 : 2024. 9. 3.(화) 14:00
- 집회 사유
 - 조례안 및 계류의안 등 안건 심의
 -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심의
 - 상임위원회별 활동 등

2. 회기 및 운영(제12대 후반기)

- 회 기 : 2024. 9. 3. ~ 9. 10.(8일간, 2024년 : 77일, 총누계 284일)
- 개의일수
 - 본회의 : 2일(연 누계 : 21, 총 누계 60)
 - 상임·특별위원회

구 분	계	의회운영	기획행정	농업복지 환경	경제산업 건설	문화안전 방	교 육	특 별
제413회 임시회	13	1	3	2	2	3	2	0
2024 년도	35	2	7	7	6	7	6	0
총 누 계	35	2	7	7	6	7	6	0

3. 의사일정

○ 본회의

일시	부 의 안 건	비 고
9.3.(화) 10:00	<p>〈 제1차 본회의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 회 식 ○ 간부소개 ○ 5분 자유발언(1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동화 의원, 이수진 의원, 이정린 의원, 김대중 의원, 김희수 의원, 이병철 의원, 최형열 의원, 국주영은 의원, 김이재 의원, 김성수 의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1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41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4. 새만금 SOC 사업 예산 복원 및 정상화 촉구 건의안 5. 지방소멸과 국가멸종 촉진하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철회 촉구 건의안 6. 쌀값 폭락 부추기는 쌀 의무수입 중단 건의안 7. 전기차 화재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개정 촉구 건의안 8. 불합리한 국립공원 개발행위 제한 해제 촉구 건의안 9. 농업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10.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11. 쌀값 대폭락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사과 및 국가 차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12. 본회의 휴회의 건 	
6. 27.(목) 14:00	<p>〈 제2차 본회의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분 자유발언(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정수 의원, 임승식 의원, 서난이 의원, 이명연 의원, 윤수봉 의원, 김슬지 의원, 장연국 의원, 전용태 의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8.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10. 전북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전북특별자치도 도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5.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 조례안	
	16. 전북특별자치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자치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전북특별자치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	
	20.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21. 전북특별자치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2.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전북특별자치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25. 전북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26.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27. 농촌공간계획 수립체계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28.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32.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	
	33.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전북특별자치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35.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전북특별자치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38. 전북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전북특별자치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0.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관한 조례안	
	4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사랑 교육에 관한 조례안	
	4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4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중등학생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 4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안 4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 4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조례안 4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5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5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식생활관 환경 조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52. 긴급현안질문의 건 5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개별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54.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건의안 55. 항공 교통편의 지역간 편차 해소를 위한 지방공항 노선 및 편수 보장 촉구 건의안 56. 공정하고 바람직한 유보통합 정책추진 촉구 건의안	

○ 상임·특별위원회

위원회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의회운영 위원회	9. 3.(화) 10:3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1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기획행정 위원회	9.4(수) 11:3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의정활동(부안) -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9.5.(목) 14: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심사 -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도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심사 - 전북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 조례안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의안심사 -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9.6(금) 100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결과보고 	

위원회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농업복지 환경 위원회	9. 3.(화) 16: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의안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공간계획 수립체계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자치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의안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특별자치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9. 6(금)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의정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농업기술원,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경제산업 건설 위원회	9. 4.(수) 14: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의안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의안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건설교통국 소관 의안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9. 5.(목) 1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의정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물고기 연구센터, 메이커 스페이스 현장 방문 	

위원회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문화안전 소 방 위 원 회	9. 4.(수) 14:00	1	《 도민안전실 소관 의안심사(2) 》 -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안심사(6) 》 - 전북특별자치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소방본부 소관 의안심사(1) 》 - 전북특별자치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9. 6.(금) 10:00	2	《 현지의정활동 》 - 전북함(해군 제3함대사령부, 목포시) - 전북도민체육대회 개최식(순창군)	
	9. 10.(화) 11:00	3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안심사 -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교 육 위 원 회	9. 4.(수) 14:00	1	○ 의안심사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사랑 교육에 관한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중등학생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식생활관 환경 조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9. 5.(목) 14:00	2	○ 현지 의정활동 - 군산교육지원청	

Ⅱ. 의안접수 및 처리

1. 접수현황

○ 접수기관 및 의안별

제413회 (2024. 9. 10.기준)

구 분	계	조 례				규칙	규정	승인 동의	예산 결산	건의 결의	기타 의안	
		소계	제정	개정	폐지							
총 계	금 회	66	45	25	19	1		2		14	5	
	누 계	1054	515	251	261	3	7	0	247	40	176	69
의 회	소계	금회	58	40	24	15	1				14	4
		누계	655	404	234	169	1	7	0	4	0	176
	의원	금회	57	40	24	15	1				14	3
		누계	620	395	232	162	1	0	0	0	173	52
	위원회	금회	1									1
		누계	35	9	2	7	0	7	0	4	0	3
도지사	금 회	8	5	1	4			2			1	
	누 계	301	65	9	56	0	0	0	216	17	0	3
교육감	금 회											
	누 계	98	46	8	36	2	0	0	27	23	0	2

2. 처리현황

○ 총 괄

제413회 (2024. 9. 10.기준)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계 류 (미료, 미심사)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대안						
총 계	금회	66	67	59	5				3	2	
	누계	1054	1046	944	63	0	17	0	22	8	
조 례 안	소계	금회	45	44	37	5				2	1
		누계	515	511	459	33	0	4	0	15	4
	의회	금회	40	39	34	5					1
		누계	404	401	365	25	0	0	0	11	3
	도지사	금회	5	5	3					2	
		누계	65	65	54	5	0	2	0	4	0
	교육감	금회									
		누계	46	45	40	3	0	2	0	0	1
	규 칙 안	금회									
		누계	7	7	7	0	0	0	0	0	0
	규 정 안	금회									
		누계	0	0							0
승인동의안	금회	2	2	1					1		
	누계	246	246	210	17	0	13	0	6	0	
예산결산안	금회										
	누계	41	41	30	11	0	0	0	0	0	
건의결의안	금회	14	16	16						1	
	누계	176	172	169	2	0	0	0	1	4	
기 타 의 안	금회	5	5	5							
	누계	69	69	69	0	0	0	0	0	0	

○ 위 원 회

구 분	회 부									처 리				미 료	미 심 사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 회	50	45			2		2	1	51	43	5		3		2
	누 계	812	506	0	0	243	40	18	5	805	704	63	17	21	0	7
의회운영 위 원 회	금 회	3	1					2		5	5					1
	누 계	32	14	0	0	0	0	18	0	29	25	4	0	0	0	3
기획행정 위 원 회	금 회	8	7			1				8	7			1		
	누 계	157	115	0	0	41	0	0	1	155	142	7	0	6	0	2
농업복지 환 경 위 원 회	금 회	12	11			1				12	12					
	누 계	147	115	0	0	32	0	0	0	147	134	2	0	11	0	0
경제산업 건 설 위 원 회	금 회	4	3						1	4	4					
	누 계	188	79	0	0	107	0	0	2	188	159	15	12	2	0	0
문화안전 소 방 위 원 회	금 회	11	11							11	8	1		2		
	누 계	112	76	0	0	36	0	0	0	112	100	7	3	2	0	0
교 육 위 원 회	금 회	12	12							11	7	4				1
	누 계	136	107	0	0	27	0	0	2	134	115	17	2	0	0	2
특 별 위 원 회	금 회															
	누 계	40	0	0	0	0	40	0	0	40	29	11	0	0	0	0

○ 본 회 의(직접부의)

구 분	부 의								처 리				미 료	미 상 정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회	16					12	4	16	16					
	누계	243	9	7	0	4	0	158	65	242	241	0	0	1	0

○ 본 회 의(의 결)

구 분	부 의								처 리				미 료	미 상 정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회	64	42	1			16	5	64	59	5				
	누계	1007	491	8	0	227	40	172	69	1025	944	63	13	5	0

* 위원회 수정안 가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 출 자	이정린·장연국·김희수 윤수봉·정종복·전용태 서난이·임승식 의원		제 출 일 자	2024. 7. 8.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7. 8.
	의 결 일 자	2024. 9. 3.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10.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		이 송 기 관	-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에 관한 사안을 전문적으로 검토·연구하고, 정치권의 협력을 통해 전북 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를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의 안정적·성공적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절실함.

□ 주요내용

- 명 칭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 위 원 수 : 11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9명)이내
- 활동기간 : 위원 선임 시점으로부터 1년
- 대상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
- 사무범위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관련 사무 일체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 · 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 출 자	전용태 의원 (찬성의원 10명)		제 출 일 자	2024. 7. 8.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7. 8.
	의 결 일 자	2024. 9. 3.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10.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		이 송 기 관	-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점에서 저출생 문제 해법을 모색하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제 · 사회적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 · 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를 구성 · 운영코자 함.

□ 주요내용

- 명 칭: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 · 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 위 원 수: 11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9명) 이내
- 활동기간: 위원 선임 시점으로부터 1년
- 대상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사무범위: 인구위기 및 지방소멸 극복 관련 정책 전반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 출 자	김동구 의원 (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4. 7. 8.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7. 8.
	의 결 일 자	2024. 9. 3.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10.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		이 송 기 관	-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신성장동력 에너지인 수소에너지 및 반도체 산업, 방위산업 등의 첨단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전북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막고 실질적인 지역 균형을 구현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및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경제 규모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명 칭 : 「전북특별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
- 위 원 수 : 11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9명) 이내
- 활동기간 : 위원 선임 시점부터 1년
- 대상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사무범위 : 첨단전략산업 관련 사무 일체

전북특별자치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제 출 자	임종명 의원 (찬성의원 10명)		제 출 일 자	2024. 8. 1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8. 27.
	의 결 일 자	2024. 9. 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10.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9. 1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4. 9. 27.		공 포 번 호	제5580호

제안이유

-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행정관서의 직접수행이 아닌 민간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주관처로 선정하여 시행해오고 있는 사업이나,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각 시도의 광역 문화재단 또는 진흥원을 지역주관처로 지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연장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조례는 조례 존치에 따른 실익이 소멸된 상황이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전북특별자치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조례」를 폐지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정종복 · 이병철 의원 (찬성의원 18명)		제 출 일 자	2024. 8. 1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8. 27.
	의 결 일 자	2024. 9. 4.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10.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9. 11.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4. 9. 27.		공 포 번 호	제5598호

제안이유

-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도록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체육환경을 개선하여 행복추구권을 향유하여 학교체육을 선진화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교육감 등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 다. 실태조사, 교육 및 연수의 실시 등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 라. 학교운동부지도자, 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제공, 협력체계 구축, 표창 등을 규정함(안 제8조~제11조)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4. 8. 1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8. 27.
	의 결 일 자	2024. 9. 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10.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9. 1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에 부합하는 건축·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향후 5년간의 비전을 설정하여 광역차원에서의 정책·행정·제도 개선 등 기본방향 제시를 위한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 「건축기본법」 제12조제2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건축기본 조례」 제4조 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건축기본계획 개요

- 목표연도 : 5년(2025 ~ 2029)
- 공간적 범위 :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8,067km²)
- 주요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분석
 -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도시환경 관련 현황, 건축 여건변화 전망
 - 향후 5년간의 광역 건축정책 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
 - 비전 달성을 위한 실행 방안 제시

전북특별자치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정종복 의원 (찬성의원 12명)	제 출 일 자	2024. 8. 2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8. 27.
	의 결 일 자	2024. 9. 4.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10.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24. 9. 1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4. 9. 27.	공 포 번 호	제5589호

□ 제안이유

- 이 조례는 대형화재, 자연재난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나.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다.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김성수·정종복 의원 (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4. 8. 2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8. 27.
	의 결 일 자	2024. 9. 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10.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9. 1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4. 9. 27.		공 포 번 호	제5597호

□ 제안이유

- 범죄피해자, 범죄피해 우려자, 사회안전약자 등에게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심물품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를 구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안심물품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안심물품 지원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이명연·김이재 의원 (찬성의원 13명)		제 출 일 자	2024. 8. 2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8. 27.
	의 결 일 자	2024. 9. 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10.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9. 1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4. 9. 27.		공 포 번 호	제5578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위탁운영과 무료관람 대상을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위원회 연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 방지 및 특혜소지를 차단하고, 관련 법령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여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업무 수탁 관련 조항을 정비함
- 나.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무료관람 대상을 정비함(안 제8조)
- 다.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운영위원회 관련 사항을 정비함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이명연 의원 (찬성의원 14명)		제 출 일 자	2024. 8. 2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8. 27.
	의 결 일 자	2024. 9. 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10.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9. 1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4. 9. 27.		공 포 번 호	제5582호

제안이유

- 전북도립미술관 무료관람 대상 중 다자녀 혜택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여 다자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생명나눔 실천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북도립미술관 무료관람 대상자를 확대함(안 제6조)

-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3명 이상 → 2명 이상)
-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 등록자 신설

나. 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의 최소 인원을 9명에서 10명으로 상향하고,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관장으로 함(안 제11조)

다. 미술관 기념품 제작 및 판매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 출 자	김만기 의원 (찬성의원 13명)		제 출 일 자	2024. 8. 22.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8. 27.
	의 결 일 자	2024. 9. 3.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10.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		이 송 기 관	-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특별위원회에서는 한빛원전의 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파악, 한빛1·2호기 연장 관련 대책 마련, 한빛원전 1~6호기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감시체계 구축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명 칭 : 「전북특별자치도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 위 원 수 : 11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9명) 이내
- 활동기간 : 위원 선임 시점부터 1년
- 대상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사무범위 : 한빛원전 대책 관련 사무 일체

전북특별자치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제 출 자	국주영은·박정규 의원 (찬성의원 8명)	제 출 일 자	2024. 8. 22.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2024. 9. 4.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10.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24. 9. 1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4. 9. 27.	공 포 번 호	제5579호

□ 제안이유

- 「점자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점자 보급 및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또한 점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포용적 사회 구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점자의 효력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해 규정함(안 제3조~제4조)
- 다. 점자발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해 명시함(안 제6조)
- 라. 시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해 규정함(안 제7조)
- 마. 점자문서 보급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바.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사용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이명연·김동구·이병철 의원 (찬성의원 12명)		제 출 일 자	2024. 8. 22.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8. 27.
	의 결 일 자	2024. 9. 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10.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9. 1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4. 9. 27.		공 포 번 호	제5590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이용료의 면제 및 할인 대상에 다자녀가정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여 다자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생명나눔 실천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체험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편의점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이용료의 면제 및 할인 대상에 다자녀가정,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 등록자를 포함(안 제8조)
- 나. 체험관 내 편의시설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
- 다. 시설 이용료 및 감면기준 변경사항 반영(안 별표 1, 별표 2)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김정기·한정수 의원 (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4. 8. 22.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8. 27.
	의 결 일 자	2024. 9. 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10.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9. 1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4. 9. 27.		공 포 번 호	제5575호

□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화재안전 시설의 개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지원 대상 및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 라. 보고·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전북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4. 8. 2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8. 27.
	의 결 일 자	2024. 9. 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10.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9. 1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4. 9. 27.		공 포 번 호	제5567호

□ 제안이유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삭제) 및 명칭 통일성 등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근거 법률명 변경(안 제1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2023.6.27.)

나. 명칭 변경(안 제12조 제목 및 제2항)

- 조례에 사용되는 명칭 통일성 및 정확한 업무 분장을 위해 ‘공인관수자’를 ‘공인보관자’로 변경

다. 명칭변경(안 제13조제1항)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문서심사관’을 삭제하고 ‘공인보관자’로 변경

전북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4. 8. 2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8. 27.
	의 결 일 자	2024. 9. 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10.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9. 1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4. 9. 27.		공 포 번 호	제5568호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 가. 전북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명)
- 나.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세계유산지구의 정의(안 제2조)
- 다.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라.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마. 세계유산보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4. 8. 2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8. 27.
	의 결 일 자	2024. 9. 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10.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9. 1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4. 9. 27.		공 포 번 호	제5569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최초로 설립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인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제정 목적, 용어 정의, 명칭과 소재지, 운영 원칙에 관한 사항 등(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나. 청소년수련시설 사업, 이용자의 범위, 이용신청, 이용료 등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 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 및 사무 위탁 근거, 수탁자선정심의회위원회 구성, 수탁자 등의 의무 등을 규정(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 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지원, 도지사의 지도·감독, 공무원의 파견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임승식 · 권요안 · 김정수 이정린 · 오현숙 · 황영석 오은미 · 국주영은 의원 (찬성의원 10명)	제 출 일 자	2024. 8. 2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8. 27.
	의 결 일 자	2024. 9. 3.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10.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24. 9. 1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4. 9. 27.	공 포 번 호	제5588호

□ 제안이유

-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기관에 실제 산모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을 포함시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정 요양기관의 정의 개정 (안 제2조제2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기관 → 「국민건강보험법」 제 42조에 따른 기관 및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나. 조례 자구 개정 (안 제3조)

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준용 규정 신설 (안 제5조)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임승식·권요안·김정수 이정린·오현숙·황영석 오은미·국주영은 의원 (찬성의원 10명)	제 출 일 자	2024. 8. 2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8. 27.
	의 결 일 자	2024. 9. 3.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10.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24. 9. 1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4. 9. 27.	공 포 번 호	제5587호

제안이유

- 초저출생 상황 속에서 다자녀 가정의 기준이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이용료 감면대상은 여전히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로 명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용료 감면 대상에 대한 개정 (안 제5조제2항제9호)
 -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나. 조례 자구 등 개정 (안 제6조제1항, 안 제7조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장연국 의원 (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4. 8. 2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8. 27.
	의 결 일 자	2024. 9. 3.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10.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24. 9. 1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4. 9. 27.	공 포 번 호	제5596호

□ 제안이유

-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의 새내기도약휴가를 신설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육아기 자녀를 둔 공무원의 보육휴가를 확대하여 가정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함.

□ 주요내용

- (안 제16조제6항) 보육휴가 대상자 확대 및 단서 조항 삭제
- (안 제16조제10항)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의 새내기 도약휴가 신설

의안번호 100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제 출 자	의 장		제 출 일 자	2024. 8. 2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9. 3.		이 송 기 관	의 장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근 거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위원 개선(안)

기 존		변 경		비고
소속 상임위원회	성명	소속 상임위원회	성명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지	교육위원회	강동화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교육위원회	이병철	
기획행정위원회	한정수	교육위원회	윤수봉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이정린	교육위원회	윤영숙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장연국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오현숙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자치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김정수 · 국주영은 · 임승식 오현숙 · 오은미 · 이정린 황영석 의원 (찬성의원 3명)	제 출 일 자	2024. 8. 2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8. 27.
	의 결 일 자	2024. 9. 3.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10.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24. 9. 1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4. 9. 27.	공 포 번 호	제5592호

□ 제안이유

- 마을자치연금 도입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고 경제기반 구축을 조성하여 고령화 문제 해결을 도모하며,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 및 제2조)
- 나. 도지사 및 주민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 다. 마을자치연금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규정함 (안 제7조)
- 라. 마을자치연금 도입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지원 및 위원회 운영 규정함.(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 마. 마을자치연금 활동과 현황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12조)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염영선·김성수 의원 (찬성의원 6명)		제 출 일 자	2024. 8. 2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8. 27.
	의 결 일 자	2024. 9. 10.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10.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9. 1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4. 9. 27.		공 포 번 호	제5581호

제안이유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염영선 의원 (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4. 8. 2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8. 27.
	의 결 일 자	2024. 9. 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10.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9. 1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4. 9. 27.		공 포 번 호	제5573호

□ 제안이유

- 통합재정기금의 합리적인 운용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자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 의무 명시(안 제3조 까지)
- 나. 통합기금운용위원회 심의 관련사항 개선(안 제6조)
 -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내역 및 금융기관 예치현황 관리 강화 등
- 다. 순세계잉여금 적립 기준 완화(안 제13조)
 - 적립 요건을 최근 3년 평균 금액 200% → 110%, 비율초과분 20% → 50%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김동구·박정규 의원 (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4. 8.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8. 27.
	의 결 일 자	2024. 9. 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10.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9. 1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4. 9. 27.		공 포 번 호	제5576호

□ 제안이유

- 도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사업 수행으로 사업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사업 추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주요내용

- 가. 도지사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법인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제2항)
- 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함.(안 제9조제3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사랑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진형석 의원 (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4. 8.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8. 27.
	의 결 일 자	2024. 9. 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10.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9. 11.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4. 9. 27.		공 포 번 호	제5599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의 동물사랑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동물 보호 및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동물사랑 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나. 동물사랑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 다. 동물사랑 교육의 실시(안 제5조)
- 라. 동물사랑 교육 관련 체험활동 교육과정 운영(안 제6조)
- 마. 동물사랑 교육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7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 출 자	전용태 의원 (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4. 8.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8. 27.
	의 결 일 자	2024. 9. 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10.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9. 11.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4. 9. 27.		공 포 번 호	제5600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신축 중심 관사 운영 정책은 많은 예산 소요, 탄력적 수요 대처 곤란, 노후도 가속화로 교직원 만족도 저하 등 지원에 한계가 있어, 공무원 주택임차비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 복지 지원 정책 다각화로 교직원들의 주거 안정을 통한 교육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라. 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 및 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제9조)

농촌공간계획 수립체계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4. 8.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8. 27.
	의 결 일 자	2024. 9. 3.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10.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9. 1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공간광역 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 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를 대행기관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지정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대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 대행기간: 2024. 9. ~ 2025. 12.(1년 4개월)
- 소요예산: 연 350백만원(국비 175, 도비 175)
- 대행사무: 농촌공간계획 수립체계 지원(법 제35조제2항 규정)

전북특별자치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김슬지·국주영은 의원 (찬성의원 17명)		제 출 일 자	2024. 8. 26.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8. 27.
	의 결 일 자	2024. 9. 3.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10.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9. 1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4. 9. 27.8. 9.		공 포 번 호	제5583호

□ 제안이유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에 대한 책무를 부여함에 따라, 남성의 육아 휴직을 활성화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일·가정양립 조성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2호)
-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전북특별자치도 남성 육아휴직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대상을 규정함(안 제6조)

전북특별자치도 도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김명지·최형열 의원 (찬성의원 8명)		제 출 일 자	2024. 8.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8. 27.
	의 결 일 자	2024. 9. 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10.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9. 1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4. 9. 27.		공 포 번 호	제5572호

□ 제안이유

-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자문을 통해 도정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신속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 정책결정의 질을 높이고자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을 위촉하여 도정발전에 활용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 나.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제 출 자	최형열 의원 (찬성의원 17명)		제 출 일 자	2024. 8.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8. 27.
	의 결 일 자	2024. 9. 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10.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9. 1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4. 9. 27.		공 포 번 호	제5574호

□ 제안이유

-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사용 및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이버보안 관리가 필요하고, 사이버 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도지사 지도·감독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라.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담당관 지정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중등학생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임종명·진형석 의원 (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4. 8.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2024. 9. 4.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10.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24. 9. 11.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4. 9. 27.	공 포 번 호	제5601호

□ 제안이유

- 학생들의 실내외 수상안전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수상안전사고 예방 및 구급상황 발생 시 습관화된 교육으로 실질적인 생존 및 대처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학생 평생안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전담부서 및 수상안전교육 활동 지도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 나. 연구비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 다. 수상안전교육의 활성화, 수상안전교육 행사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9조 ~제10조)
- 라. 수상안전교육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
- 마.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국주영은·나인권 의원 (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4. 8.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8. 27.
	의 결 일 자	2024. 9. 4.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10.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24. 9. 1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4. 9. 27.	공 포 번 호	제5570호

□ 제안이유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치 신설 (안 제5조의2)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국주영은·이병도·황영석 의원 (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4. 8.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2024. 9. 3.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10.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24. 9. 1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4. 9. 27.	공 포 번 호	제5586호

□ 제안이유

-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협으로 사회활동에서 많은 제약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장애인을 위해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명시(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도지사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명시 (안 제3조 ~ 안 제4조)
- 다. 고령장애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명시(안 제5조 ~ 안 제6조)
- 라.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 및 위탁 근거 명시(안 제7조 ~ 안 제8조)
- 마. 중복지원 금지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명시(안 제9조 ~ 안 제10조)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 조례안

제 출 자	정중복 의원 (찬성의원 13명)		제 출 일 자	2024. 8.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8. 27.
	의 결 일 자	2024. 9. 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10.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9. 1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4. 9. 27.		공 포 번 호	제5577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협력과 조정을 이끌어내는 신뢰, 소통, 협력, 규범, 네트워크 등의 사회적 자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여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다. 사회적 자본 육성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제7조)
- 라. 사회적 자본 육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마. 사회적 자본 연구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전북특별자치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국주영은·김정수 의원 (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4. 8.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8. 27.
	의 결 일 자	2024. 9. 3.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10.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9. 1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4. 9. 27.		공 포 번 호	제5595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반려동물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 나.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다.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라. 반려동물산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임승식 의원 (찬성의원 11명)	제 출 일 자	2024. 8.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8. 27.
	의 결 일 자	2024. 9. 3.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10.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24. 9. 1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4. 9. 27.	공 포 번 호	제5594호

□ 제안이유

- 맹견 및 위험견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 및 대응을 위한 반려견 안전 관리대책에 따른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시행(‘24.4.27.)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시행,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 나. 맹견사육허가 신청 및 기질평가 절차 등 기질평가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7조의4)
- 다. 신청서 접수 및 결과 통보 등 시장·군수로의 위임 근거 규정 마련 (안 제18조)

전북특별자치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오은미 의원 (찬성의원 19명)	제 출 일 자	2024. 8.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8. 27.
	의 결 일 자	2024. 9. 3.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10.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24. 9. 1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4. 9. 27.	공 포 번 호	제5593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시행(‘24.12.27.)됨에 따라 같은 법 제66조 귀농어·귀촌 활성화 특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귀농어·귀촌 청년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 나. 귀농업인의 귀농어 후 5년 이내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하고, 귀농어·귀촌 청년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한 지원 규정 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이정린 의원 (찬성의원 8명)		제 출 일 자	2024. 8.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8. 27.
	의 결 일 자	2024. 9. 3.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10.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9. 1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4. 9. 27.		공 포 번 호	제5591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농업의 전문성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도지사와 중장년농업인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 나.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다.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향상 및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라. 중장년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마.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하여 시·군 및 지역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진형석 의원 (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4. 8.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8. 27.
	의 결 일 자	2024. 9. 4.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10.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9. 11.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4. 9. 27.		공 포 번 호	제5602호

□ 제안이유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교육 행정기관 및 학교에서의 에너지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가. 교육감 등의 책무(안 제3조)
- 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안 제4조)
- 다. 실태조사 및 점검, 평가(안 제5조~제6조)
- 라.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위원회(안 제8조~제11조)
- 마. 홍보 및 교육 등(안 제12조)
- 바. 교류협력(안 제13조)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운영숙 의원 (찬성의원 10명)		제 출 일 자	2024. 8.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8. 27.
	의 결 일 자	2024. 9. 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10.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9. 11.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4. 9. 27.		공 포 번 호	제5603호

□ 제안이유

- 교육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가.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나. 하자 검사(안 제5조)
- 다. 지도·점검 및 하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안 제6조~제7조)
- 라. 시스템 관리(안 제8조)
- 마. 통계 관리 및 공시(안 제9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제 출 자	박정희 의원 (찬성의원 10명)		제 출 일 자	2024. 8.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8. 27.
	의 결 일 자	2024. 9. 4.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10.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9. 11.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4. 9. 27.		공 포 번 호	제5604호

□ 제안이유

- 아이들의 이른 성호르몬 분비로 정서적 불안, 사회성 발달 저해 등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조숙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바른 성장기를 거쳐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교육감의 책무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나. 시행계획의 수립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다.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사항을 정함(안 제5조~제6조)
- 라. 우선지원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마.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의안번호 103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조례안

제 출 자	박정희 의원 (찬성의원 10명)		제 출 일 자	2024. 8.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8. 27.
	의 결 일 자	2024. 9. 4.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10.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9. 11.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4. 9. 27.		공 포 번 호	제5605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나.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다. 이에스지(ESG)교육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라.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1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박정희 의원 (찬성의원 10명)		제 출 일 자	2024. 8.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8. 27.
	의 결 일 자	2024. 9. 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10.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9. 11.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4. 9. 27.		공 포 번 호	제5606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내 각급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등하굣길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가.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나. 실태조사(안 제4조)
- 다.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안 제5조)
-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박정희 의원 (찬성의원 10명)		제 출 일 자	2024. 8.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8. 27.
	의 결 일 자	2024. 9. 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10.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9. 11.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4. 9. 27.		공 포 번 호	제5607호

□ 제안이유

-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가.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나. 경계선지능 학생을 파악하는 진단검사 실시(안 제5조)
- 다.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사업(안 제6조)
-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전북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박정희 의원 (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4. 8.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8. 27.
	의 결 일 자	2024. 9. 3.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10.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24. 9. 1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4. 9. 27.	공 포 번 호	제5585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내 선배시민으로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선배시민의 사회참여 촉진,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 등 지역사회발전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도지사의 책무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나. 기본계획의 수립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다. 사업 및 지원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라. 홍보 및 포상 사항을 정함(안 제6조~7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식생활관 환경 조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장연국·전용태 의원 (찬성의원 6명)		제 출 일 자	2024. 8.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8. 27.
	의 결 일 자	2024. 9. 4.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10.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9. 11.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4. 9. 27.		공 포 번 호	제5608호

□ 제안이유

- 안전한 식생활관 환경 조성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급식종사자가 안전하고, 교육공동체가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식생활관 환경 개선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나.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다. 식생활관개선협의회의 구성·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라. 급식종사자 배치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마. 휴게시설 및 휴게시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바. 교육·연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김정기·이병도 의원 (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4. 8.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8. 27.
	의 결 일 자	2024. 9. 4.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10.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24. 9. 1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4. 9. 27.	공 포 번 호	제5571호

□ 제안이유

- 계약업무 추진과정에서 도내 지역업체와 계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 등을 활용하지 못해 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완하고자 전북자치도가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계약업무 처리 매뉴얼을 제작·보급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기술개발 제품 구매율 향상 및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정부가 설립한 중앙 정부 산하 공공기관까지 우선구매 요구기관 확대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 나. 도내 중소기업제품 등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필요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4조2 신설)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제 출 자	서난이·임승식 의원 (찬성의원 8명)		제 출 일 자	2024. 8. 2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2024. 8. 27.
	의 결 일 자	2024. 9. 3.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10.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9. 11.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4. 9. 27.		공 포 번 호	제5584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놀이기반 조성 등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용어를 정의하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 제3조)
- 나.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5조)
- 다.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라. 전북특별자치도 아동 놀 권리 증진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마.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새만금 SOC 사업 예산 복원 및 정상화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김동구 의원 (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4. 8. 27.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9. 4.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23년 정부는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을 적절한 근거도 없이 강제적으로 실시하여 새만금 SOC 사업을 전면 중단시켰고, ‘24년 8월 정부의 적정성 검토 결과 새만금 SOC 사업은 모든 기준에서 ‘적합’하다고 발표함.
- 새만금 SOC 사업은 문제가 없는 사업이었고, 검토 용역을 실시한 정부 결정은 지난 긴 세월 새만금에 희망을 가진 전북자치도민에게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을 주었음
- 정부는 불필요한 적정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 것에 대해 전북자치도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하고, 새만금 SOC 사업의 예산복원과 신속한 재개가 이루어져야 함을 건의하고자 함
- 또한 새만금 기본계획에 전북자치도의 입장을 배재해서는 결코 아니 되며, 정부는 전북자치도의 의견이 새만금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고자 함

지방소멸과 국가멸종 촉진하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철회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이명연 의원 (찬성의원 14명)		제 출 일 자	2024. 8. 28.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9. 4.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가. 대한민국은 국토 면적의 12%를 차지한 수도권만 발전한,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기형적인 국가로, 서울 공화국이나 수도권 일극체제라는 말이 시사하듯 수도권 초집중화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되었음

나.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 8월 8일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며 발표한 서울과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결정은 수도권 초집중화와 일극체제를 심화시켜 지방소멸은 물론 국가멸종까지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다. 이에 지방소멸과 국가멸종을 촉진하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철회를 촉구하고자 함

쌀값 폭락 부추기는 쌀 의무수입 중단 건의안

제 출 자	박용근 의원 (찬성의원 8명)		제 출 일 자	2024. 8. 2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9. 4.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최근 지속적인 쌀값 하락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수확기를 앞둔 쌀농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40만 톤 이상의 쌀이 공급과잉 및 쌀값 폭락의 주범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의 중단을 건의하기 위함임

전기차 화재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개정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이수진 의원 (찬성의원 10명)		제 출 일 자	2024. 8. 2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9. 4.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정부의 탄소중립 2050계획 및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전기차의 배터리 결함 등으로 인한 화재 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음
- 특히 전기차 화재는 내연기관차 화재보다 빠르게 연소되며 배터리 열폭주 등으로 인해 진압이 어려워 큰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
- 독일 등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전기차에 대한 지하 주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다른 주요 국가에서도 전기차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제화에 나서고 있음.
- 이에 180만 전북특별자치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정부가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한편 전기차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 건의하는 바임.

불합리한 국립공원 개발행위 제한 해제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염영선 의원 (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4. 8. 3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9. 4.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국립공원 지정으로 구역 내 주민들은 오랜기간 동안 각종 규제와 통제로 사유재산권 침해와 개발행위를 제한 당해왔음.
- 이에 불합리한 국립공원 개발행위 제한 해제를 통해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농업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김정수·국주영은 의원 (찬성의원 6명)		제 출 일 자	2024. 8. 3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9. 4.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최근 기후변화, 농산물 가격폭락 등으로 농산물 판매 수입은 줄어든 반면 필수농자재 등 농업생산비는 매년 상승하고 있어 농업 경영위기는 전례 없이 심각한 상황임.
- 농업인들의 농업생산비 증가는 농업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지금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다면 농가의 경영 여건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음.
- 이에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민의 경영 안정을 위해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대해 국가 차원의 책임과 의무가 요구되고 있음.
-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필수농자재의 가격 안정화와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 설정 및 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필수농자재 국가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자율성·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윤수봉 의원 (찬성의원 11명)		제 출 일 자	2024. 8. 3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9. 4.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지방의회법」은 2018년 2월 8일 전현희 의원발의를 시작으로 여·야 의원(이해식·서영교·이원욱·박성민의원)을 가리지 않고 발의하였으나 번번이 ‘임기만료폐기’ 되었음
-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은 제22대 국회에서만큼은 지방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임

쌀값 대폭락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사과 및 국가 차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임승직 · 권요안 · 오현숙 이정린 · 국주영은 · 김정수 오은미 의원 (찬성의원 14명)		제 출 일 자	2024. 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3.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9. 4.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정부가 지난해 ‘쌀값 20만 원 수준을 유지하겠다’ 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7일 기준 80kg 쌀 한 가마니 가격은 17만 7,615원으로 산지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쌀 생산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쌀 농사를 지어도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쌀값 안정화를 위해 80kg 쌀값을 최소 22만 원 수준으로 보장해야 함.
- 또한 올해 4월 말 기준 전국 쌀 재고량은 92만 5천 톤으로 전년 대비 25만 톤(37%)이 증가해, 쌀값 정상화를 위해서는 2023년산 쌀 재고 물량에 대한 추가 시장격리를 즉각 시행해야 함.
-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쌀값 대폭락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사과와 올해 수확기 쌀 가격 최소 22만 원 수준 보장, 2023년산 쌀 재고 물량 최소 15만 톤 이상 시장격리, 2024년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 전면 재수립, 「양곡관리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개별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최형열 의원 (찬성의원 10명)		제 출 일 자	2024. 9. 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10.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9. 11.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전체 사고와 사망사고 건수 모두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사고 방지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대책 마련이 현안 과제로 떠올랐으나, 여전히 법률적 관리 수단이 부족한 상황임.
- 그간 정부 및 지자체에서 원동기장치 이상의 면허 소지 의무화, 승차 인원 제한, 이용자 안전 교육 등의 시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대부분 상위 법령 상의 근거가 없는 조치로,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상황임.
-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별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바임.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이정린 의원 (찬성의원 10명)		제 출 일 자	2024. 9. 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10.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9. 11.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발표 이후 의·정 갈등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음.
-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으로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지역 간 의료격차, 진료과목 간 의료인력 불균형, 공공의료 체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 현재 우리 의료계가 겪고 있는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박희승 의원 발의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다시 제출되었음.
- 이에 공공·필수·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과 고민이 담겨 있고, 국민의 생명권 보장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조속한 처리와 이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됨.

항공 교통편의 지역간 편차 해소를 위한 지방공항 노선 및 편수 보장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김동구·김대중·나인권·서난이 이병도·김이재·김만기·문승우 김희수·김성수·강태창·정종복 김명지 의원	제 출 일 자	2024. 9. 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10.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24. 9. 11.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국내 민간항공사들이 지역주민의 항공 교통편의는 물론 항공불편으로 인해 지역에 미치는 악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오로지 기업편의적인 차원에서 이윤발생 유무에 따라 지방공항 노선과 편수를 휴지 또는 폐지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과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공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항공노선과 편수를 유지하고자 각종 보조금 지원 등 행·재정적 노력을 하는 등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심정으로 행정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실정임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국토교통부가 지역간 항공 교통편의 불균형 해소와 항공 소외지역 국민들의 교통권 확보를 위하여 지방공항의 노선 및 편수가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함

공정하고 바람직한 유보통합 정책추진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국주영은·서난이·정종복 김정수·강동화·염영선 김성수·박정규 의원 (찬성의원 1명)	제 출 일 자	2024. 9. 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10.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24. 9. 11.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오랜기간 기관 이원화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 및 지원체계가 달라 각 기관에 재원중인 아동에게 제공되는 교육 및 보육서비스 역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정부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지방차원의 사무이관 방안의 경우 지자체 사무의 일부만이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방안으로 유보통합의 본래 목적인 기관 일원화를 달성할 수 없음.
- 또한 유보통합 관련 예산 역시 편성이 늦어지고 있고, 관련 선도사업이나 시범사업의 예산 편성액 또한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유보통합에 따른 국비 편성이 시급함.
- 이에 유보통합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방안에 대한 수정이 시급하며, 유보통합 시 필요한 재원의 충분한 확보 및 관련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제 출 자	각 상임위원장		제 출 일 자	2024. 9. 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10.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4. 9. 11.		이 송 기 관	도지사, 교육감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감사근거 및 대상

○ 행정사무감사 근거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8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대상기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감사근거 및 대상

○ 감사기간 : 2024. 11. 9. ~ 11. 19.(11일간)

○ 감사장소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필요시 현지확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 출 자	의 장		제 출 일 자	2024. 9. 9.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4. 9. 10.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		이 송 기 관	-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위원 선임(안)

(상임위원별 가나다순)

	소속 상임위원회	의 원 명	비 고
1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국주영은	
2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3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김정수	
4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오은미	
5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오현숙	
6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이정린	
7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임종명	
8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장연국	
9	교육위원회	윤정훈	
10	교육위원회	전용태	

Ⅲ. 민원 접수 및 처리

1. 접수현황

○ 분야별

(2024. 7. 26. ~ 9. 10.)

구분	계	행정	교육	사회	보건의 복지	환경	산업 경제	문화 체육 관광	농축 수산	교통	도시 계획	건설	건축	기타
금회	15	1	2				1	1						10
2024년 누계	61	2	6	1	4	1	2	1	1	1		1		41

○ 제출자별

구분	계	인원별					기관단체
		소계	1인	2인~9인	10인~99인	100인 이상	
금회	15	14	13	1			1
2024년 누계	61	60	59	1			1

2. 처리현황

구분	계	처리별					처리중
		소계	처리	불수리	취하	타기관 이송	
금회	15	15	15				
2024년 누계	61	61	61				

3. 위원회별 처리현황(제12대)

(2022. 7. 1. ~ 2024. 9. 10.)

구분	위원회별	접수	처리상황				비고
			계	처리	계류	반려	
전회 까지	소 계	208	208	208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10	10	10			
	농업복지환경 위원회	9	9	9			
	경제산업건설 위원회	3	3	3			
	문화안전소방 위원회	12	12	12			
	교육위원회	65	65	65			
	기 타	109	109	109			
금회	소 계	15	15	15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1	1	1			
	농업복지환경 위원회						
	경제산업건설 위원회	1	1	1			
	문화안전소방 위원회	1	1	1			
	교육위원회	2	2	2			
	기 타	10	10	10			
누계	소 계	223	223	223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11	11	11			
	농업복지환경 위원회	9	9	9			
	경제산업건설 위원회	4	4	4			
	문화안전소방 위원회	13	13	13			
	교육위원회	67	67	67			
	기 타	119	119	119			

IV.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1. 2024년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횟수별)

(2024. 7. 26. ~ 9. 10.)

기관별	구 분	요구	제출	미제출	비율(%)	비고
계	금 회	82	82		100	
	누 계	445	445		100	
전북특별 자치도	금 회	56	56		100	
	누 계	333	333		100	
전북특별 자치도교육청	금 회	26	26		100	
	누 계	112	112		100	

2. 2024년 위원회별 요구상황(횟수별)

(2024. 7. 26. ~ 9. 10.)

기관별	구 분	계	기획 행정	농업복지 환경	경제산업 건설	문화안전 소방	교육	운영	특별
계	금 회	82	27	9	12	19	13	0	2
	누 계	445	101	68	81	113	68	0	14
전북특별 자치도	금 회	56	26	5	11	12			2
	누 계	333	91	47	68	97	19		11
전북특별 자치도 교육청	금 회	26	1	4	1	7	13		
	누 계	112	10	21	13	16	49		3

3. 제12대 의회 의원 요구 및 제출현황(횡수별)

(2022. 7. 1. ~ 2024. 9. 10.)

구 분	요 구	제 출	미제출	비 고
합 계	1,550	1,550		
전북특별자치도	1,177	1,17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373	373		

4. 제12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횡수별)

(2022. 7. 1. ~ 2024. 9. 10.)

구 분	계	기획 행정	농업복지 환경	경제산업 건설	문화안전 소방	교육	운영	특별
합 계	1,550	312	314	299	305	284	2	34
전북특별 자치도	1,177	275	247	266	277	85	2	25
전북특별 자치도교육청	373	37	67	33	28	199		9

5. 제12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건수별)

(2022. 7. 1. ~ 2024. 9. 10.)

구 분	계	기획 행정	농업복지 환경	경제산업 건설	문화안전 소방	교육	운영	특별
합 계	3,497	712	703	698	748	592	4	40
전북특별 자치도	2,732	645	579	614	697	162	4	31
전북특별 자치도교육청	765	67	124	84	51	430		9